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31일

황학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윤 *은	윤 *은 1994-02-09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(황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31